

해외연수/출장 보고서

출 장 자	고속자
출 장 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
출 장 기 간	2013년 6월 2일 ~ 6월 8일
목 적	금연정책 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WHO FCTC 제6조 초안그룹 회의 참석 및 전문가 면담
세부 활동사항	○ 세부 활동 - 날 짜: 2013년 6월3일~2013년 6월6일 - 장 소: 스위스 제네바 WHO - 면 담 자: Simon Cotterell 외 draftging group 참석자 - 내 용: WHO FCTC 제6조 초안그룹 회의 참석 ○ 세부 활동 - 날 짜: 2013년 6월 5일 - 장 소: 스위스 제네바 - 면 담 자: 태국의 금연정책담당자(Vichit-Vadakan, Phattraprasit), 정영호(보사연), 송명준(보건복지부) - 내 용: 태국의 담배관련 가격정책 논의 ○ 세부 활동 - 날 짜: 2013년 6월 6일 - 장 소: 스위스 제네바 - 면 담 자: 외국의 금연정책관련 담당자(Simon Cotterell, Sharon Appleyard, Madeleine Heyward, Mark Huber, Gervais Coulombe, Rolf Diemer, Akira Takahashi), 정영호(보사연), 송명준(보건복지부) - 내 용: 참가국의 가격 및 비가격 금연정책 관련 비교 및 논의 ○ 세부 활동 - 날 짜: 2013년 6월 7일 - 장 소: 스위스 제네바 - 면 담 자: 외국의 금연정책관련 담당자(Songsamphant, Gunvihok, Visaruthvong, Perucic), 정영호(보사연), 송명준(보건복지부) - 내 용: 금연정책 지표 관련 FCTC의 국가별 비교 가능 지표 논의

1. FCTC 제6조 초안그룹 회의록

- 일시: 2013. 6. 3~6. 7
- 장소: WHO, 스위스 제네바
- 안건: Open-ended drafting group on Article 6

<회의진행>

1. Welcome and introduction
2. Election of officers
3. Adoption of the agenda and method of work
4. Review of decision FCTC and objectives of the drafting group
5. Discussions and drafting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the drafting group
6. Way forward (the process for obtaining Parties' comments and submitting the complete draft guidelines to COP6 as requested in decision FTCT/COP5(7))
7. Any other business
8. Closure

6월3일

회의내용

가. Welcome and introduction

- ☐ WHO FCTC secretariat은 회의 참가국에게 환영인사 및 본 회의 목적 설명
 - FCTC 6조 가이드라인 검토 및 확정
- ☐ COP 6차 총회를 위해 본 회의에서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총회 6개월전 당사국에 회람예정

나. Election of officers

- ☐ 호주를 chairman으로 선정

다. Adoption of the agenda and method of work

- ☐ FCTC/COP5(7)을 검토하고 작성하는 것이 본 회의의 주요 목적임.
- ☐ 단어, 문장, 문단 등 전체 내용 세밀하게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완성토록 함.

라. Review of decision FCTC and objectives of the drafting group

<Guiding principle에 관한 논의>

☐ General Comment 관련 논의사항

- 필리핀, 칠레 등의 국가가 조세 정책은 당사국의 주권임을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견 없음을 보였음.

<가이드라인에 관한 논의>

2. Relationship between tobacco taxes, price and public health

- ☐ 캐나다 대표는 2.1 가격탄력성과 2.2 소득탄력성-부담력(affordability)은 서로 상호간에 깊은 관계에 놓여있음을 언급함.

2.1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consumption/prevalence(price elasticity)

- ☐ 호주대표는 레퍼런스를 각주에 표기하는 것을 삭제요청.

- technical report 형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들을 기술하는 가이드라인이므로 특정한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태국은 비록 technical report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사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 참고문헌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므로 참고문헌을 각주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

-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논의를 거쳐 참고문헌을 명기하는 것으로 결정함.

- ☐ 토고대표는 tax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tax 용어를 삭제하고 price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EU, 파나마 대표는 tax, price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진

- 결국 당사국들간에 조세정책이 상이하고, tax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가격정책 또한 별도의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tax와 price를 모두 병기하는 원안으로 채택.

- ☐ 카자흐스탄 대표는 자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면서 유효한 조세정책이 되기 위해 “significant”라는 용어를 삽입할 것을 제안

- 여기에 더하여 “effective”조세정책에 대해서 논의함.

- 특정국가에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용어인 “significant”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는 두가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음.

- 첫째, prevalence (흡연을 감소), intensity (어느 정도 소비되는 지의 수준, 흡연량) -> 둘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담배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문장에 in most countries 추가

- 고소득국가 저소득-중소득국가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함.

- 태국 대표는 가격인상의 효과는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소득수준별로 따로 제시하

는 것은 단순반복적이며 불필요함.

- technical export는 가격인상의 효과가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 2배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문함.

2.2 Taxation and affordability (income elasticity)

- 태국대표는 가격과 실질가격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다르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 이에 technical export는 가격은 실질가격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자문을 하고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 price 용어들은 실질가격의 개념으로 작성된 것임.
- affordability를 낮추도록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모델링에 의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modeller에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캐나다 대표는 당사국의 재정부서는 tax policy에 관해 효과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appropriate econometric -statistical technic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여러 대표들이 세부적인 용어 선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고, technical expert는 econometric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한 것이라 자문함.
- 2.2 내용이 2.1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등은 삭제하도록 이견이 모아졌고, 2.2에서는 소득탄력성과 affordability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도록 간명하고 명확하게 구성되도록 수정 보완됨.
-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recommendation을 검토,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 오만대표는 recommendation을 원안대로 유지하자고 한 반면, 필리핀 대표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것을 제안. 카자흐스탄, 인도 등의 국가들이 오만 의견에 동의하고 EU대표는 본 recommendation은 COP5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

3. Tobacco taxation system

<General Comment>

- 의장은 3장에 대해 일반적 견해에 대해 당사국에 요청하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 본 3장의 검토작업은 4일 evening, 5일 전일+evening(필요한 경우) 검토를 하기로 당사국들에게 공지함.
- 오만 등의 국가들은 chap 3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간단하게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manufacture관련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국가가 제시함.
- 3장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그리고 종가세 추천을 중심으로 작업하자고 일부 국가가 제기함.

- EU는 담배조세구조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고, mixed system에 대한 내용도 유지하는 것을 원함.
 - 이에 대해 케냐대표는 EU가 제시한 방법 이외에 다른 정책방안도 존재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제시함. 토고 대표 역시 3장은 EU만의 모델이므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다른 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함.
- 한편, 터키는 3장은 EU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면서 EU의견에 동조함. EU 역시 터키의견에 동의함.
 - 이러한 상이한 의견에 대해 당사국들간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음.
- 의장은 이러한 general comments를 검토하여 technical expert가 수정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작성된 안에 대해 화요일, 수요일에 논의하기로 정함.

8. International cooperation

- 당사국의 다른 당사국의 보고서를 컨설팅(“consulting”)이라는 용어를 “reviewing”대신에 활용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중국 등이 “consulting”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므로, 반대하고, 의장이 당사국의 의견을 물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함.
- 몇 개 용어를 수정한 후 8장 수정을 완료함.

6월4일

회의내용

- 8.에 대한 문구 일부 추가 수정
 - relative 대한 용어를 share of price로 명료하게 수정
- 8장. 이슈는 26조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6조와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삭제를 고려한 부분에 대해 일부 당사국에서 반론을 제기하였고, 작성자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삭제하기로 함.
 - financial resource raising의 문제로 8장은 Article 26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함.
- International ~ 문단을 어제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논의. 앞 문단과 연계하여 작업(이태리). 이태리 의견에 동의하나 순서를 바꾸어 정보제공 후 이용에 대한 순서로 가도록 함.
- 중국은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을 제기하였고, secretariat은 웹에 각 구분 및 전체 모두 가능함을 제시
 - Database 구축에 관한 중국의 문의가 있었고 사무 secretariat은 데이터 베이스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용가능함을 확인해 줌.

- ☐ 마지막 문단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제하자는 중국의 제안이 있었음.
 - 오만, 태국 등은 제약적이지 않고 spirit에 일관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중국은 이에 대해 본 문장의 내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
 - 마지막 문단 삭제 필요.(중국) 워킹그룹은 원래 강제성이 있어 당연한 것임.
 - 다른 당사국은 문단은 필요하나, 다만 간단히 정리해서 짧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함.
- ☐ 다른 조항(14조)의 가이드라인에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secretariat) time period COP 주기적으로 운영
 - 남아공은 가격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강조하도록 문단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을 제기함.
 - 다른 당사국은 이미 자동적으로 협력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함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진행됨.
 -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레퍼런스 기재하도록 함.
- ☐ 중국과 캐나다의 조합된 의견 vs 오만, EU, tech expert의 조합된 의견
 - 태국이 새로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당사국 조정후 결정됨.

4. Tax administration

- ☐ supply chain 관리의 중요성을 태국이 논의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tax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entity의 확인과 control(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논의함.
- ☐ tobacco supply chain 관리를 추가 삽입하도록 제안(태국). 다른 일부 당사국도 동의하면서, 중요성을 강조. tax administration에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세부 내용은 다음 아래 부분으로 이동 권함. 서론 격에서는 간단히 EU의 안으로 제시
- ☐ 칠레는 본 서론적 부분을 삭제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당사국들이 받아들임

4.1. Authorization/licensing

- ☐ 태국이 supply chain 관리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논의 당사국들은 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entities를 확인하고, 관리
- ☐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와 소매업자 등이 내용 구성에 포함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유통, 소매업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함.
 - relevant entities~로 변경
- ☐ 이와 관련하여 문구 조정이 있었음.
- ☐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 재확인 필요함.
- ☐ “should be applied~” 개념은 가이드라인에서 강한 표현이 될 수 있음.

4.2 Warehouse system/movement of excisable goods and tax payments

☐ 이견없음

4.3 Anti-forestalling measures.

☐ 3가지 예를 기술하는 것에 대해 의견 제시가 있었음.

- 필리핀은 삭제 요청
- 파나마는 3개의 예 중에 2개만 삭제 요청
- 예로 3개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당사국에 도움이 되므로 유지 필요(룩 아일랜드)

☐ 태국은 특정국가의 constraint 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보기(example)일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3개의 보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

☐ 필리핀은 가이드라인에서 세 번째 점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파나마는 3개의 예 중에 2개만 삭제 요청하였음. 예로 3개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당사국에 도움이 되므로 유지 필요(룩 아일랜드)

- 태국은 특정국가의 constraint 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보기(example)일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내용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3개의 보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

4.4 Fiscal marking

☐ 캐나다는 COP5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recommendation을 기초하여 내용 수정을 요청함

→ 유지함.

☐ 재무부에서는 마킹에 대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 유용

- 케냐) 조세부과의 중요성 강조를 위해 유지하는 것이 좋음.

4.5 Enforcement

☐ criminal investigation을 삽입하는 것을 토고가 제안

→ 몇몇 국가들(중국 등)의 반대로 criminal 삭제하고 investigation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

5. Use of revenues

☐ 캐나다는 COP5의 recomm과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함.

- 카자흐스탄은 COP5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유지하도록 요청

☐ 담배에 부과된 조세의 활용에 대해 담배관리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태국 등에서 제안. 그러나 중국은 특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반대

○ 파나마) 이미 이용에 대한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음.

○ 칠레) 이견 의무사항이 아니라 “could”의 개념임

○ 터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므로 강하게 규정하기 어려움

○ 아프리카국가) 성장을 위해 큰 범위에서 지출하고 있음. 담배를 위해서만 지출하기에는 한계있음.

☐ recommendation 반복에 대한 논의

☐ national law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한계, 문제점 논의

☐ could consider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6. Tax-free/duty-free sales

☐ 캐나다는 COP5차 결정에서 불법거래 관련 recommendation을 채택하지 않았음.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불법거래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

○ 오만, EU는 새롭게 제안된 recommendation COP5차에서도 불법거래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불법거래 내용을 유지할 것을 제안

○ 캐나다는 절충안을 제시

☐ erode 에 대한 근거 논의

○ 남아공은 land-border를 land 삭제. 시가렛을 tobacco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제안)

→ 기타 몇몇 국가에서 minor한 단어수정들을 제안(면세품은 여행자뿐 아니라 내국인도 가능하므로 해당 단어 삭제)

→ 수정된 안을 채택

☐ 3번째 문단은 삭제하기로 결정.

-> recommendation 과 중복

7. Illicit trade.

☐ 캐나다는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이는 COP5차 총회에 결정문에서 불법거래 관련 recommendation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함.

☐ EU, 오만은 COP5차 총회에서도 불법거래 관련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지하자고 주장.

☐ 이에 대해 캐나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음. 논란이 지속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논의하여 일단 수정안을 작성하였으나, 워킹그룹에 일치된 결론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명기하여 제출하기로 함.

※ 중국 -> COP5에서 결정된 recommendation이 본 drafting group이 수정, 보완가능한가

☐ legal counsel

- COP에서 결정된 지침과 원칙하에서 워킹그룹이 작업한 것이 원칙
- 현저하게 이슈 레이징이 있다면 작업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기하는 것이 절차
- COP 결정내용은 다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

☐ Guiding Principle은 유지하지 채택하였고, 1.3은 삭제

- 1.1과 1.3이 혼동을 주므로(오만) 삭제하기로 함.
- 1.2는 표현에 대한 여러방식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표현을 채택함.

6월5일

회의내용

3.1 Structure of tobacco taxes

<General Comments>

※ 오만) 6개의 GCC국가들은 no excise tax, only import tax 부과

☐ 케냐 등 면세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쿡아일랜드는 면세품은 공중보건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문장 추가 요청

☐ 복잡한 조세구조는 공중보건의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 그러나 중국은 불필요하고 prejudgement 내용으로 부적절

☐ public health 표현 포함 여부

- 중국, 일본 반대, EU, 오만, 쿡아일랜드, 파나마 등 찬성.
- 중국은 복잡한 조세체계가 공중보건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미약함을 제시함.

☐ technical expert

- complex tax system이 공중보건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연구결과 존재

3.1.1 Types of taxes

☐ 이견없음(mainly 단어만 추가)

3.1.2 Specific excise taxes

<이슈>

☐ Uniform

- 중국은 근거가 미흡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내용의 수정을 제안함.
- technical expert) 가격차이가 적으면 저가 담배 구매 욕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근거가 있음.

3.1.3 Ad valorem excise taxes

☐ 쿡아일랜드) 문장 구조 수정

☐ 이견없음

3.1.4 Mixed specific and ad valorem excise taxes

☐ 이견없음.

3.1.5. Systems with minimum rates

☐ 관련 내용은 3.1.4에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 따라서 3.1.5의 내용이 3.1.4에 포함되고 3.1.5는 삭제

☐ 카자흐스탄 등 몇몇 국가들은 multi-tiered tax system에 대해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해당 당사국 정부가 관련 tax system 이행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3.1.5에 multi-tiered tax system을 추가하여 기술하는 방안과 3.3에 관련 내용을 포함(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3.1.5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

3.1.6. Other taxes on tobacco products

☐ 벨기에는 VAT가 담배가격의 상대가격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VAT가 품목에 따라 다르게 rate가 부과됨.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적절하지 않음을 제기함.

- 일반적으로(generally)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수정

3.2. Level of tax rates to apply

☐ 카자흐스탄 대표는 최적세율: 담배조세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요청

- 캐나다, 중국은 이러한 명시는 가이드라인을 limiting하게 함. 다른 일부 국가들은 최적세율을 제시하는 것이 counter productive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기함. 이미 조세율이 70%를 상회하는 국가의 담배산업 관계자들이 이러한 점을 역이용할 수 있음.
-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국가는 이러한 지침이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을 수정요구. 왜 이러한 명시적 지침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지 않는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3.1.5 재논의

- ☐ 캐나다는 3.3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expert에 문의하였고, technical expert는 텍스트구조에 논의하므로 tiered tax도 tax 구조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고 논의 흐름, 섹션별 조정 등으로 유지하도록 함.

※ 문장 조정 논의를 진행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함.

6월6일

회의내용

- ☐ 마지막날 섹션은 재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
- ☐ 2.2를 3.3으로 이동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expert에게 지난 논의에서 수정안을 요청하였음.
 - expert의 견해에 따르면, 소득탄력성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vulnerable group)이 상이해서 3.3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앞선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expert는 2.2에서 일부내용을 선택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구성하였음.
 - 조세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담배소비를 더 감소시킬 수 있음..... 등의 문장으로 수정하여 제시
 - 쿡 아일랜드, 캐나다 등은 좀더 명확하게 문장이 구성되도록 요청하였고, 중국, 일본은 캐나다에 동의. 논의한 당사국은 새로운 문장에 동의하였고, 3.3에 추가하여 넣기로 함.
- ☐ Scope에 관한 내용
 - 이 가이드라인은 excise tax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expert)하고, 조세부과로 인한 job loss 증가의 내용은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를 요청(남아공)
 - 중국은 tax부과로 인해 가격증가는 중국의 경우를 보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directly' 삭제 요청
 - 이외에 내용 구성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순서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음.
 - 태국은 중국에 조세부과가 간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중국은 본인 국가의 사례를 들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생산자가 조세증가분을 부담하게 되면서 가격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은 결과에 대해 근거를 제시함.
 - 이에 대해 태국은 directly를 유지하면서, generally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시함.
 - 호주는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된 문장을 제안함.
→ 논의 결과, 호주의 제안이 채택됨.

5. use of revenue

- ☐ revenue 활용에 관한 문장 수정이 논의됨.

- revenue에 대한 이용을 금연프로그램에 국한하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일부 당사국들은 주권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려하여, 내용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여러 가지의 대안을 검토함.
- 태국, 오만, 터키, 케냐 등이 논의하였고, 수정된 내용으로 동의함.

□ 과테말라국의 “Theses guidelines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arties’ obligations~”문구 삽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Legal adviser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음.

- legal adviser는 이에 대한 내용이 이미 article 2, article 5에서 제시되고 있어 추가로 본 가이드라인에 언급할 필요는 없음을 제시하였음.
- 과테말라는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article6을 수행할 때, 보건부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행하게 되는데, 타부처 또는 국가 상호간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함.

□ 3.2 WHO, 월드뱅크 주식담기 관련 (excise tax 70%)

- 월드뱅크에 문의한 결과, 월드뱅크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로 제공하기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World bank 자료를 제외하고 WHO 자료만 제시하면서 이에 적합하도록 문장 수정함.

□ 첫 번째 페이지(1page)에서 이태리는 서론 격에 불법거래 내용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장은 expert에게 적절한 내용으로의 수정을 요청한 바 있었음.

- 이에, expert는 담배의 불법거래(Article15) 내용이므로, scope 부분으로 이동하여 작성하자는 견해를 제안함.
- 아르메니아는 동의하였고, 캐나다는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문장 수정을 요청함. 그러나 태국은 expert가 제안 내용은 각 국가가 향후 실행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제안과 다소 상이하며, 이에 expert의 견해를 수용함을 제안함. 아르메니아는 두 견해를 수용하여 조합할 것을 제안. 수정안으로 논의 당사국이 모두 동의함.

□ Tiered tax systems에 대한 내용을 다시 구성하고, 위치를 재배치하자는 견해에 따라 expert가 조세 구조를 소개하는 위치인 3.1.5가 타당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expert가 작성한 새로운 문장을 제시하였음.

- 캐나다: 벌써 3시에 임박해 있고, tiered syste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캐나다 견해 동의. 어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를 소개하는 것은 본 구성에 적합하지 않음. tiered system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오해를 전달할 소지가 있음. 두 번째 문단은 흐름 상 구성이 적절하지 않음.
- 오만: In summary, ~ 부분도 논의 맥락을 종결짓는 것 같은 느낌이 발생함.
- 일본: 논의 시간이 부족하므로, 결정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태국: 어제 이를 포함하는 등의 논의에 이미 많은 시간으로 소요했고, 이에 대해 expert에게 작성을 요청하였음. 당사국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부 당사국은 마지막 부분의 tiered system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국에게 다소 부담이 가는 내용이므로 삭제를 요청함.

- 새로운 문장 작성, 수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태국은 tiered system은 working group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EU의 adviser로 추가된 내용이므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파나마 등의 당사국들이 동의함.

□ 4.1 Authorization/licensing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수정안에 동의함.

□ use of terms, references

- 3.2 WAP(weighted average prices) : expert는 원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삭제하기로 함.
- List of references: 조세 논의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문헌 리스트를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작성하여 배부함.

< 이후 일정 >

□ Secretariat은 본 회의 이후의 일정에 대해 공지함.

- 6개월전에 본 문서를 각 국가에 배부
- 모든 내용을 번역본으로 작성할 예정임.
 - 당사국의 코멘트를 취합한 후, 6주면 번역완료, 9월정도 코멘트를 간단히 받은 후, 코멘트 수정 범위에 대해 논의.
- 10월 코멘트를 토대로 의장은 몇몇 대표당사국과 서로 논의.
- 마지막 draft 수정작업 참가국
 - 의장, technical adviser, developed, developing 당사국, (EU, 케냐, 파나마)를 포함하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다음주 2주후에 회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텍스트 송부 예정

2. 태국의 담배가격정책

□ 담배세 부과방식

- 타일랜드는 담뱃세에 목적세를 부가하는 국가에 해당됨. 2001년 건강증진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주류 소비 감소, 건강증진 캠페인을 위한 기금법을 제정함. 이 법에 따라 ThaiHealth가 고정적으로 술과 담배로부터 전체 국가 수입의 2%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타일랜드의 담배 가격 및 세금의 구조는 매우 복잡한데, 수입관세율, 소비세, 건강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기업의 이윤으로 구성됨. 관세율은 종가세로 적용됨.
- 현재 담배에 대한 세금은 공장도 가격의 80%이며, 7%가 부가가치세임. 1팩당 지방세가 1Baht이고, 건강세는 소비세의 2%에 해당됨. 담뱃세는 담배 소매가격의 63%임.
- 담뱃세율은 지난 20년간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1993, 1995, 1996, 1997년에 각각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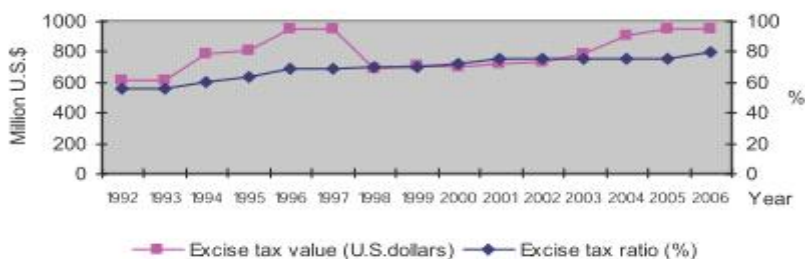
62%, 68%, 70%였고, 이것은 지역과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었음.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85%를 차지하고 있음.

- 세금은 공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담배의 경우 관세 포함 가격을 기준
- 85%는 세금 포함 가격이며 따라서 소비세는 공장가격에 566%를 더한 가격과 같음.
- 모든 담배는 Ministry of Finance에서 재정한 소매가격에 의거하여 7%의 부가세를 더함.
- 정부로부터 설정된 수입 담배의 특정 소매가격은 실제 소매가격과 상이하게 다를 수 있음.
- 태국은 물가상승률보다 가파르게 담배 가격을 상승시켰음.
- 1992년 1월에 그 비율은 공장가격 기준으로 55%로 설정.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비율은 공장가격 기준 85%로 상승.
- 이 비율들이 세금포함 비율인 것을 볼 때, 2009년에는 공장가격 기준 1.22배에서 5.6배로 상승. 따라서 1992년에서 2009년 사이 담배의 소비세는 365% 이상 증가하였음.

〈타일랜드의 연도별 담배세율 및 담배가격의 구성〉

Year/No.	Frequency	Excise tax rate (%)	Share (%)		
			Basic price	Total tax	Profit
1992/8,18	17	55	39.65	55.46	4.89
1993/13	19	55	38.75	54.36	6.89
1993/16	20	60	33.98	57.97	8.06
1994/3	20	60	34.55	58.83	6.61
1995/1	18	62	32.62	60.22	7.16
1996/2	18	62	32.56	60.12	7.32
1996/8	19	68	26.37	63.03	10.60
1997/3	19	68	25.17	60.49	14.34
1997/4	19	70	23.60	62.07	14.33
1998/6	19	70	21.37	56.87	21.76
1999/2	18	70	21.79	57.85	20.35
1999/3	18	71.5	20.70	58.94	20.35
1999/5	18	71.5	20.70	58.94	20.35
1999/6	1	71.5	17.71	51.44	30.84
1999/8	18	70	19.77	53.13	27.10
1999/13	21	71.5	18.55	53.53	27.92
1999/15	1	71.5	20.35	58.04	21.61
1999/16	1	71.5	18.47	53.33	28.20
2001/1	24	75	16.03	56.04	27.93
2001/2	1	75	15.54	54.57	29.89
2001/3	1	75	14.87	52.51	32.61
2002/2	1	75	18.11	62.41	19.49
2005	19	79	13.94	60.48	25.59
2007	19	80	13.04	62.79	24.17
2008 ¹⁾	19	80	13.04	63.57	23.39
2009	19	85	9.71	66.04	24.24

[타일랜드의 담배세율과 세금소득(1992~2006)]



□ 담뱃세 활용사례

- 담뱃세 중 특히 소비세는 정부 수입의 중요한 재원임.
- 2001년 10월 7일부터 모든 제조 및 수입 담배에 대하여 건강세를 부과하며, 이는 소비세 수익의 2%에 해당됨. 건강세로 인한 수익은 주로 흡연 및 음주 관리와 같은 건강증진, 연구에 활용됨.

3. 외국의 담배가격+비가격정책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 수준은 매우 낮은 국가에 해당됨.

〈표 1〉 다판매 담배가격: OECD 국가

변수명	2008년 자국통화	2008년 Int'l \$ PPP	US \$	2010년 자국통화	2010년 Int'l \$ PPP	US \$
Australia	9.6	6.45	6.65	12.0	7.74	10.77
Austria	3.6	4.23	5.01	4.0	4.66	5.21
Belgium	4.2	4.71	5.79	4.8	5.39	6.31
Canada	7.6	6.14	6.17	8.1	6.61	7.84
Chile	1300.0	3.56	2.07	1600.0	3.91	3.06
Czech	58.0	4.11	3.00	63.0	4.35	3.31
Denmark	32.0	3.78	6.05	37.0	4.32	6.47
Estonia	32.2	3.49	2.90	31.9	3.53	2.66
Finland	4.4	4.59	6.12	4.4	4.59	5.73
France	5.3	5.80	7.38	5.6	6.15	7.30
Germany	4.7	5.55	6.55	5.0	5.74	6.45
Greece	3.0	4.23	4.18	3.2	4.37	4.17
Hungary	568.4	4.20	3.02	610.5	4.27	2.80
Iceland	665.0	5.79	5.52	900.0	6.67	7.47
Ireland	8.1	8.27	11.20	8.6	9.51	11.14
Israel	19.0	5.35	5.00	21.0	5.56	5.56
Italy	3.6	4.16	5.01	3.7	4.21	4.82
Japan	300.0	2.58	3.31	300.0	2.71	3.47
Luxembourg	3.2	3.26	4.45	3.7	3.70	4.79
Mexico	28.0	3.58	2.07	30.0	3.61	2.37
Netherlands	4.7	5.40	6.59	5.1	5.80	6.58
New Zealand	10.2	6.45	5.90	11.3	6.95	8.19
Norway	71.0	7.14	10.14	81.0	8.19	13.30
Poland	5.8	3.02	1.94	8.0	4.09	2.59
Portugal	3.3	4.70	4.59	3.5	5.03	4.56
Korea	2500.0	*	1.98	2500.0	*	2.11
Slovakia	2.1	3.72	0.10	2.4	4.38	3.15
Slovenia	2.2	3.53	3.06	2.5	3.96	3.26
Spain	2.5	3.21	3.48	3.4	4.41	4.43
Sweden	49.0	5.32	6.27	50.0	5.39	6.91
Switzerland	6.6	3.84	6.20	7.2	4.22	6.93
Turkey	3.0	2.88	1.97	4.5	3.88	2.98
UK	5.7	8.68	8.27	6.3	9.36	9.80
USA	4.6	4.58	4.58	5.7	5.72	5.72
OECD평균	—			—		

□ 조세 비중의 경우에 있어서, FCTC는 excise tax의 70%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3%로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2〉 다판매 담배가격 중 조세 비중: OECD

(단위: %)

	specific excise	ad valorem excise	2008년 (소계) excise tax	% all other taxes	(총계) total tax	specific excise	ad valorem excise	2010년 (소계) excise tax	% all other taxes	(총계) total tax
Australia	0.53	0.00	0.53	0.09	0.62	0.55	0.00	0.55	0.09	0.64
Austria	0.15	0.43	0.58	0.17	0.74	0.13	0.43	0.56	0.17	0.73
Belgium	0.08	0.52	0.60	0.17	0.77	0.07	0.52	0.59	0.17	0.76
Canada	0.61	0.00	0.61	0.06	0.67	0.58	0.00	0.58	0.09	0.67
Chile	0.00	0.60	0.60	0.16	0.76	0.00	0.60	0.60	0.16	0.76
Czech	0.36	0.28	0.64	0.16	0.79	0.34	0.28	0.62	0.17	0.79
Denmark	0.40	0.14	0.53	0.20	0.73	0.34	0.21	0.55	0.20	0.75
Estonia	0.31	0.31	0.62	0.15	0.77	0.33	0.33	0.66	0.17	0.83
Finland	0.07	0.52	0.59	0.18	0.77	0.08	0.52	0.60	0.19	0.79
France	0.06	0.58	0.64	0.16	0.80	0.06	0.58	0.64	0.16	0.80
Germany	0.35	0.25	0.60	0.16	0.76	0.33	0.25	0.58	0.16	0.74
Greece	0.04	0.54	0.58	0.16	0.73	0.09	0.58	0.67	0.19	0.86
Hungary	0.29	0.28	0.57	0.17	0.74	0.31	0.28	0.59	0.20	0.79
Iceland	0.39	0.00	0.39	0.20	0.58	0.36	0.00	0.36	0.20	0.56
Ireland	0.44	0.18	0.62	0.18	0.80	0.43	0.18	0.61	0.17	0.79
Israel	0.05	0.54	0.59	0.13	0.72	0.20	0.48	0.68	0.14	0.82
Italy	0.04	0.55	0.59	0.17	0.75	0.04	0.55	0.58	0.17	0.75
Japan	0.58	0.00	0.58	0.05	0.63	0.58	0.00	0.58	0.05	0.63
Luxembourg	0.10	0.47	0.57	0.13	0.70	0.09	0.48	0.57	0.13	0.70
Mexico	0.00	0.48	0.48	0.13	0.61	0.03	0.46	0.49	0.14	0.63
Netherlands	0.37	0.21	0.58	0.16	0.74	0.36	0.21	0.57	0.16	0.73
New Zealand	0.58	0.00	0.58	0.11	0.69	0.61	0.00	0.61	0.11	0.72
Norway	0.53	0.00	0.53	0.20	0.73	0.52	0.00	0.52	0.20	0.72
Poland	0.34	0.41	0.76	0.18	0.94	0.37	0.31	0.68	0.18	0.86
Portugal	0.39	0.23	0.62	0.17	0.80	0.39	0.23	0.62	0.17	0.79
Korea	0.53	0.00	0.53	0.09	0.62	0.53	0.00	0.53	0.09	0.62
Slovakia	0.45	0.24	0.69	0.16	0.85	0.43	0.24	0.67	0.16	0.83
Slovenia	0.15	0.43	0.58	0.17	0.75	0.15	0.44	0.59	0.17	0.76
Spain	0.07	0.57	0.64	0.14	0.77	0.06	0.57	0.63	0.15	0.78
Sweden	0.13	0.39	0.52	0.20	0.72	0.12	0.39	0.52	0.20	0.72
Switzerland	0.30	0.25	0.55	0.15	0.63	0.30	0.25	0.55	0.08	0.63
Turkey	0.00	0.58	0.58	0.15	0.73	0.00	0.63	0.63	0.15	0.78
UK	0.40	0.24	0.64	0.13	0.77	0.38	0.24	0.62	0.15	0.77
USA	0.32	0.00	0.32	0.05	0.37	0.40	0.00	0.40	0.05	0.45

□ FCTC article6(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조치 및 조세조치)에서 종가세와 종량세의 혼합세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만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담배의 상대가격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4. 금연정책지표 산출 가능 데이터, FCTC

□ FCTC에서 금연정책지표 산출을 위해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음.

〈표 3〉 FCTC article6: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조치 및 조세조치

	변수 내용	
6-1.	Have you adopted and implemented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sales to or imports by international travellers of tax-and duty-free tobacco products?	
6-2.	Have you adopted and implemented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sales to or imports by international travellers of tax-and duty-free tobacco products?	
6-3.	Have you adopted and implemented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price and tax measures to reduce the demand for tobacco by prohibiting or restricting sales to or imports by international travellers of tax-and duty-free tobacco products?	
6-4.	Have you adopted and implemented, where appropriat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or have you implemented, where appropriate, programmes prohibiting or restricting, as appropriate, imports by international travellers of tax-and duty-free tobacco products?	
6-5-1.	Are Ad valorem taxes only levied	종가세만 부과
6-5-2.	Are specific taxes only levied	종량세만 부과
6-6.	Is a combination of specific and ad valorem taxes levied	종가세 및 종량세
6-7.	Do you earmark any percentage of your taxation income for funding any national plan or strategy on tobacco control in your jurisdiction?	사용목적규정
6-8.	Do you hav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burden of tobacco use in your population, e.g. the overall cost of tobacco use imposed on your society?	담배의 경제적 부담
6-9.	Do you have information on tobacco-related mortality in your population?	담배관련 사망

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료 보고되지 않음.

□ FCTC 이외에 WHO에서 발간한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2011)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변수명	변수 내용	
R1~R4	Price of a 20-cigarette pack of the most sold brand	다관매담배가격 (currency, PPP, US\$)
R5~R11	Taxes as a % of price of the most sold brand	다관매담배가격 중 세금 비중 (specific excise, ad valorem excise, import duties, total tax, % excise tax,% all other taxes, Int'l\$PPP)
R12	Price of a 20-cigarette pack of the cheapest brand	최저담배가격 (Int'l\$PPP)
R13~R16*	Price of a 20-pack of the most sold brand of bidis	다관매 비디 담배가격 (currency, PPP, US\$)
R17~R20*	Taxes as a % of price of the most sold brand of bidis	다관매 비디 담배가격 중 세금 비중 (specific excise, ad valorem excise, import duties, total tax)
R21	Tobacco excises have been increased overall since 2008 however due to price variability the effect is not necessarily apparent in the tax indicators.	2008년이후의 담배세 증가

주)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료 보고되지 않음.